

장학금지급 규정

- 제정 : 1982. 03. 10
- 개정 : 1984. 03. 05
- 개정 : 1985. 03. 05
- 개정 : 1989. 03. 01
- 개정 : 1990. 03. 01
- 개정 : 1992. 03. 01
- 개정 : 1997. 09. 01
- 개정 : 1998. 03. 01
- 개정 : 2004. 03. 02
- 개정 : 2008. 09. 01
- 개정 : 2010. 04. 01
- 개정 : 2011. 10. 01
- 개정 : 2011. 01. 10
- 개정 : 2013. 03. 01
- 개정 : 2014. 09. 01
- 개정 : 2016. 08. 01
- 개정 : 2017. 03. 01
- 개정 : 2017.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별도의 규정이라 함은 교외장학금 지급 단체의 특정 급여조건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설치)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학생지원처 장학 담당자가 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건강과학대학장, 평가실장, 여학생감,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경영지원실장, 학생지원차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침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획득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에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관장) 본 위원회의 모든 사무는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9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 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 본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학기 성적이 C⁺이상인 자(단 원호장학생, 체육특기장학생, 나눔장학생, 근로장학생은 C⁰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환경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3.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명예선양 공로가 있는 자
4. 원호법에 의한 원호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체육특기자
5. 교직원 직계자녀(본교 재단에서 유지·경영하는 재단 임직원 직계자녀 및 학교교직원 직계자녀)
6. 학생회 간부, 신문사, 방송국, 사회봉사활동등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7.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근로한 자
8. 교외장학생(외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선정 또는 지정된 자
9. 기타 학생지도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장 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

제11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의 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장학금

가. 신입생

- 1)최우수인재장학금(등록금전액+입학금):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수석으로 입학한 자
- 2)우수인재장학금(등록금전액+입학금):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차석으로 입학한 자
- 3)대학수석장학금(등록금전액+입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각 대학 수석으로 입학한 자
- 4)수시장학금 : 신입학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5)수원글로벌장학금 : 신입학 학생 중 수능성적이 우수한 자
- 6)근로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활급이 필요하며 학내 각종 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 7)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 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8)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본교 재단에서 유지·경영하는 재단 임직원 직계자녀 및 학교교직원 직계자녀
- 9)원호장학금 :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또는 그 직계자녀
- 10)외국인장학금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11)음악특기장학금 : 매년 본교 주최 콩쿨에 입선한 학생중 본교 입학자
- 12)미술특기장학금 : 매년 본교 주최 미전에 입선한 학생중 본교 입학자
- 13)수원가족장학금 : 본교 형제, 자매, 남매가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한명에게 지급
- 14)특성화장학금 : 특성학과 재학생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나.재학생

- 1)성적우수장학금 (100%-20%) : 직전학기성적이 각 학(부)과별 우수한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학과별 인원 및 장학금은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2)근로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활급이 필요하며 학내 각종 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 3)봉사장학금 : 학생회, 신문사, 방송국, 사회봉사활동 등 기타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4)공로장학금 : 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5)유공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의 발전에 명예선양 공로가 큰 자
- 6)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 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7)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본교 재단에서 유지·경영하는 재단 임직원 직계자녀 및 학교교직원 직계자녀

- 8)원호장학금 :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 9)검소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단,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0)정의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1)창의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2)형제자매장학금 : 본교 형제, 자매, 남매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한명에게 지급
- 13)외국인장학금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14)음악특기장학금 : 매년 본교 주최 콩쿨에 입선한 학생중 본교 입학자
- 15)미술특기장학금 : 매년 본교 주최 미전에 입선한 학생중 본교 입학자
- 16)사랑장학금 : 본인이 지체장애 1급 ~ 5급에 해당하는 자
- 17)전공우수장학금 : 교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경시대회, 학술대회, 콩쿨 입상자 중 해당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8)드림JOB끼장학금 : 취업역량 향상과 취업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자 중 취업정보처장이 추천한 자
- 19)외국어 우수 장학금 : 교 내/외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중 국제어학원장이 추천한 자
- 20)교육훈련비장학금 : 어학, 취업, 전공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21)드림장학금 : 미래인재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중 미래인재아카데미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창업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2)특성화장학금 : 특성학과 재학생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23)교환학생장학금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3. 교외 및 기타장학금

- 1)특별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유학장학금 : 재학생 및 졸업생이 유학을 할 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특별공로장학금 : 특별히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국가장학금 :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5장 장학생선정 및 장학금지급

제1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신청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해당학과 학(부)과장 및 대학장은 신청자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지원과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장학생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학금 배정) 학생지원처에서는 매학기 학년 학과별 장학생 인원 배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 교내 장학금의 지급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등록금고지서 생성시 반영하며, 매학기 등록기간 중 총무처 경리과에서 등록을 대행케 한다. 단 장학금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로 한다.

제15조(중복지급 금지) 장학금의 혜택은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지명 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특별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6조(장학금 회수)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타 대학으로 진출할 경우
3. 학칙 위반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제적 및 자퇴자
5. 전과를 통해 전공이 변경된 경우, 직전 학과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직전 소속 학과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과 처분은 취소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82. 3.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4. 3.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5. 3.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7.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 3.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 1.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7.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7. 5.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순위) 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 해당학기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의해 선 발한다.

1. 해당학기 미수과목이 없는 자
2. 고학점 신청자
3. 전공교과목 수가 많은 자
4. 실점평균이 높은자
5.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6. 직전학기 전공 교과목 수가 많은 자

(단, 위항의 조건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점자로 처리한다)

제3조(선발대상 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해당학기 이수학점이 미달된 경우(5학기까지 15학점, 6학기부터 12학점)
2.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서 성적이 “B⁰” (평균 3.0)학점 미만인 경우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8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4. 조기복학으로 4학년 2학기가 7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제외

제4조(선발인원) ①성적장학생 : 각 학과 학년별 성적순으로 선발함을 기준으로 하되 학(부)과 인원에 비례하여 선발한다.

②체육특기 장학생 : 매학년도 학기별 체육특기장학생 인원은 체육위원회에서 선발, 결의 후 학생지원처에 통보한다. 단, 추천된 자는 등록금의 30%이상을 지급한다.

③제1, 2항의 장학생 외의 장학생 선발 인원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

가)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활금이 필요하며 학내 각종 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나)각 학과 및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 소유자 및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2. 대상추천 : 각 학과 학과장 및 부서장은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에 근로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학생

지원처에 추천한다.

3. 근로내용 : 근로장학생의 근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무보조 : 도서분류, 목록작성, 문헌조사, 도서배열, 카드정리, 번역, 각종 통계와 자료정

리, 원고정 리, 편집, 사무보조 등

나)근로 : 실험실습실 기기정리, 각종 청소, 영립, 관리 등

다)기타 : 기타 학생신분에 부응하는 작업

4. 근로기간 : 학기 중과 방학으로 구분한다.

5. 근로시간 :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시급에 의하여 근로시간은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6. 근무상황 보고 : 근로장학생 배치기관은 근로활동기록부를 비치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매달 근로기간 말일까지 근로활동기록부를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장학금 지급기준 :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등 10만원 단위로 지급하고, 특별근로(도우미, 멘토링)의 경우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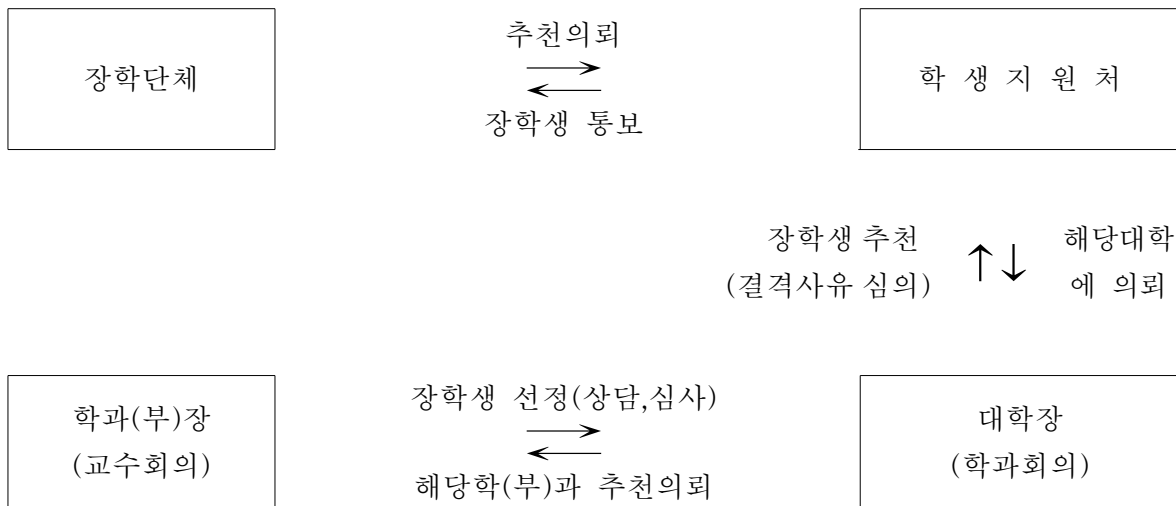
8. 근로장학생 교체

가. 근로기관의 제반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 자세가 불성실한 경우는 교체한다.

나. 교체시 교체자는 소속학과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외 장학생) 교외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장학설립자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내장학생 선발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장학생 선발과정을 통하여 선발한다.

교외 장학생 선발과정



제7조(학생회 간부, 학생기자, ROTC의 간부)학생회 간부, 학생기자, ROTC의 간부가 당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수혜금액을 환수하고 보궐자가 잔임기간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중수혜) 장학금의 혜택은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수혜의 경우 상위 장학금

액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특별장학금의 시행에 한하여 예외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1988.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0.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8.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4.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6. 8. 1일부터 시행한다.